

#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23
----------	-----

제출년월일 : 2005. 7. 4.

제출자 : 고성군수

## 1.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호국보훈정체추진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용어 변경  
(안 제3조, 제6조)
- 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감면범위 확대 (안 제14조제1항)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회생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 유공자 및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다. “방문진료환자중 65세이상자 및 보건의료 취약지 무료순회진료”를 “방문진료환자중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자 및 보건의료 취약지 무료순회진료”로 수수료 감면방법 변경(안 제14조제6호)

##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5. 5. 31. ~ 6. 20. (결과 : 의견없음)

## 4. 본문 : 덧붙임

## 고성군 조례 제 호

###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를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로 한다.

제3조(진료수가) 본문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건강보험진료수가”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중 “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의료 보험수가 ”를 “요양급여비용”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별지 제2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을 “수수료를 감면”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6호 중 “방문진료 환자 중 65세이상자”를 “방문진료환자 중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이상자”로 하며, 제8호 내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고성군(국가 및 경상남도 포함) 행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 수가는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수수료를 말한다.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9.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10.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12. 참전 유공자
13.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15조 본문중 “ 시험의 의뢰에 의하지 아니할 수 ”를 “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로 한다.

제1조중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제5조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  
건강보험법」”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p> <p>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u>국민건강보험법</u>에 의하여 고시한 <u>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u>을 적용 정수한다.</p> <p>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u>의약품의 비용</u>은 <u>건강보험약가기준액표</u>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의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6조(기타 수가) ①보건복지부고시 <u>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액표</u>에 규정하지 아니한 구강보건 사업인 치석제거(스켈링), 치아홈매우기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4와 같이 정수 할 수 있다. ②예방접종수수료는 보건복지부고시 <u>의료보험수가 기준액표</u>에 의거 주사료를 정수할 수 있다. 단,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에 의한 수급자 등 무료대상자는 제외한다.</p> <p>제7조(검사시험의뢰) ①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2에 정한 시험용검체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②(생략)</p>	<p>제명 :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p> <p>제3조(진료수가) ----- 「<u>국민건강보험법</u>」 ----- <u>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u> -----</p> <p>제4조(약가) &lt;삭제&gt;</p> <p>제6조(기타 수가) ①----- <u>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u>----- ----- ----- ----- ②----- <u>요양급여비용</u>----- -----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p> <p>제7조(검사시험의뢰) ①----- ----- ----- ----- ----- <u>별지 제2호서식 또는</u> -----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u>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u></p> <p>②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위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 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3. (생 략)</p> <p>4. <u>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u></p> <p>5. (생 략)</p> <p>6. <u>방문진료환자중 65세이상자 및 보건의료 취약지 무료순회진료</u></p> <p>7.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em;">(신 설)</p> <p>제15조(검사 · 시험불용) 검사, 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하여는 검사 <u>시험의 의뢰에 의하지 아니 할 수 있다.</u></p>	<p>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p> <p>----- <u>수수료를 감면</u>-----</p> <p>②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고성군(국가 및 경상남도 포함)행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다음 각호의 1에 의 한다. 다만, 감면대상 수가는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수수료를 말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4. (삭제)</p> <p>5. (현행과 같음)</p> <p>6. <u>방문진료환자중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이상자</u></p> <p>7. (현행과 같음)</p> <p>8. <u>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u></p> <p>9. <u>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u></p> <p>10. <u>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u></p> <p>11. <u>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u></p> <p>12. <u>참전 유공자</u></p> <p>13. <u>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u></p> <p>제15조(검사 · 시험불용) -----</p> <p>----- <u>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않</u> <u>을 수</u>-----.</p>